

환경관련법(안) 입법예고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행환경보전법의 분법화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안)에 이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 수질환경보전법(안), 대기환경보전법(안), 소음·진동방지법(안)이 입법예고 된바 있어 환경관련인 여러분에게 참고자료로 게재합니다.

◎ 환경청공고 제89-1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안) 입법예고

- 바. 유해물관리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관련교육을 이수토록 함.
- 사. 유해물 사업자의 업무를 성실히 이해하고 유해물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해물 안전관리협회를 두도록 함.

◎ 환경청공고 제89-12호

수질환경 보전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전법과 독물및 극물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를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위해의 방지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등 유해화학물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유해물 사업자의 범위에 종전의 제조업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외에 유해물을 보관·수송하거나 업무상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물을 취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취급자)를 포함시킴.
- 나. 유해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 그 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 구명하고 필요한 기술검토 및 조사업무를 전담할 화학물질 심사단을 설치토록 함.
- 마.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유해물은 제조·판매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규제 및 수질보전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1)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2) 방지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업자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환경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공공기관에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함.
- (3)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

경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 (4) 환경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배출부과금 징수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중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은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달성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공동처리키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공동처리구역내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6) 환경청장은 수질오염이 심화된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호소 및 그 수질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호소수질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
- (7) 시·도지사는 호소수질 관리구역내에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하여 호소수질보전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시설의 설치 및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8) 호소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심의를 위하여 환경청에 호소수질보전 대책위원회를 둠.

는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출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지시설은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하도록 함.
- 라. 환경청장은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등으로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마.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도록 함.
- 바.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배출시설 관리인을 임명하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사. 환경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생물의 생육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아. 환경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료사용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등에 대하여 종류별로 황의 함유기준을 정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업자별로 필요한 물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및 제조·판매자에게 연료의 사용제한 및 변경사용, 제조와 판매금지 명령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내에서는 적합한 시설없이 악취 발생물을 소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경청장은 생활악취 규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악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차.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카.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자동차 배출물질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자동차 표본에 대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작하여야 하고, 환경청장은 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타. 환경청장은 유효수명 기간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인증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자에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결

◎ 환경청공고 제89-13호

대기환경 보전법(안)입법예고

- 1. 제정취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관련 법령의 분법화 작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환경청장은 전국적인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당해 구역내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고, 특별대책지역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함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파. 환경청장은 결함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작자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의 20%에 상당하는 결함시정 충당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환경청장은 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차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정비를 위한 벌금 부과 및 개선을 명하거나, 사용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 자동차 배출물질의 검사용기기를 최초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형식승인을 받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용기기의 사용자는 환경청장의 정도검사를 받도록 함.
- 나. 환경청장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연료용 첨가제의 제조·수입·판매와 첨가제를 사용한 연료의 제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에게 첨가제로 인한 유해성 심사를 받아 등록 하도록 함.

◎ 환경청공고 제89-14호

소음·진동 방지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법을 제정, 소음·진동 발생원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청장은 전국 또는 일부 필요한 지역의 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진동 실태를 상시 측정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당해 구역내의 소음·진동 실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환경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각종 소음진동기준의 측정, 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진동 측정기기를 최초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형식승인을 받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용 기기의 사용자는 환경청장의 정도검사를 받도록 함.
- 라. 공장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출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지시설은 방지시설업자가 설계 시공하도록 함.
- 마.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기록을 비치도록 함.
- 바.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배출시설 관리인을 임명하고 환경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 사. 폭약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약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아. 교통 소음·진동 규제지역내에서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을 통제할 수 있고 동 지역내에서 사업대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음·진동 규제기준 이내로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함.
- 자. 자동차를 제작 하는자는 자동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환경청장은 소음허용기준에 적합anz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함.
- 차.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동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환경청장은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거나 사용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카. 환경청장은 주거생활의 정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방지시설 설치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소음원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시함.
- 타. 환경청장은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주거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장을 설치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
- 파.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